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는 전문의에게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 돈 균

선진국들이 200~300년 동안에 이루어 놓은 경제발전을 짧은 기간에 이루기 위해 노력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는 선두 주자로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진폐증과 같은 직업성질환은 이미 1960년대에 보고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초에는 벤젠, 수은, 크롬중독 등이 발생하였으며 1976년과 1978년에는 노말헥산에 의한 하반신마비 사건과 사염화탄소 중독사건 등이 발생하여 정부당국은 1981년에 근로자들의 재해와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4년 반월공단에서 연중독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으며 1987년에는 수은중독에 의한 사망자와 카드뮴중독증 여부에 관한 논란이 비등하였는가 하면 형광등 제조업체에서 수은중독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직업성질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것은 1988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도에 도금업에서의 크롬중독환자가 다수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화되기도 하였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을 크게 일으키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직업성질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든 것은 원진 레이온 근로자들의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은 물론 최근(1995년) LG 양산공장의 2-Bromopropane 취급 근로자의 75%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건 등이다. 단일 산업장에서 동일 질환으로 판정된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정도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 일찍 산업의학 전문의 확보와 그 활용방안이 제도화되어 있었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 따위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동안 이러한 제도확립이 소홀히 되어 왔던 것은 경제개발이란 대조류에 밀려 철저를 기할 수 없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정부가 직업성질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노동부는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를 과감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전문의를 요구하고 있었다.

대한산업의학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산업의학 전문지식을 가진 특수인력의 개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산업의학 전문의 수련제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산업의학 전문의 수련제도는 확립되었으며 그 수련교육을 시작한지 만 4년으로 접어드

는 해가 바로 금년이다. 그리고 2000년에는 정규 산업의학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친 유능한 산업의학 전문의가 탄생하게 된다.

근로자의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직업성질환과 건강장애의 총체적인 관리와 건강수준의 유지 향상은 물론 고도의 산업의학의 이론과 기술 및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산업의학 전문의들은 21세기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역군으로서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가는데 손색 없는 전문인력이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지난 정부는 노동계와 산업의학계의 반대여론에도 개의치 않고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안정과 개혁의 동시 추구를 꾀하는 균형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기할 수 있는 효율성의 원칙,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성의 원칙이란 전제하에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는 산업의학 전문의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규제완화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법적인 옹호하에 유능한 산업의학 전문의들이 소신을 갖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되었다.

1997년 4월 10일 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기업운영에 있어서 기업 생산성과 관련성이 적은 인력에 대한 고용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IMF 상황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직업성질환을 최소한으로 줄여 전체 산업보건관리비용보다 몇십배 많이 드는 산재요양 및 보상비용을 포함한 제비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산업의학 전문의가 생산의 주역인 근로자들의 건강을 살필 수 없어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고,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근로자들의 건강확보와 증진은 곧 기능공 확보에 이어질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됨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확보하려는 기업의 이념에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가 국제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인력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1991년 국제연합에 가입함으로서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에도 가입하고 있다. 국제 노동기구의 조약에는 노동시간, 임금, 결사의 자유 원칙 등의 조항 뿐만 아니라 산업보건 부문이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세계노동기구에서도 산업보건의 중심적인 역할은 산업의학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산업보건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산업의학 전문의가 없이는 세계노동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산업보건 분야의 조약 이행에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산업의학계는 우리 나라의 세계화에 보조를 같이하고 훌륭한 기능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들이 노동으로 오는 질병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인간 기능의 한계와 노동조건에서의 적응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산업기술이 요구하는 노동조건을 가능한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그 방책을 강구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나아가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산업보건의 본래의 목적 수행을 위해 산업의학 전문의가 산업현장에서 소신을 갖고 언제나 자기 전문성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